
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수종별 이식가능수령·이식적기·고손율 및 감수율기준(제37조제2항관련)

구분 수종	이식가능 수령	이 식 적 기	고 손 율	감 수 율	비 고
일반사과	5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	15퍼센트 이하	이식 1차 년:100퍼 센트 이식 2차 년:80퍼센 트 이식 3차 년:40퍼센 트	그 밖의 수종은 유 사 수 종 에 준하여 적 용한다.
왜성사과	3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20퍼센트 이하		
배	7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0퍼센트 이하		
복숭아	5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5퍼센트 이하		
포도	4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0퍼센트 이하		
감귤	8년 이하	6월장마기, 11월, 12월~3월 하순	10퍼센트 이하		
감	6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20퍼센트 이하		
밤	6년 이하	11월 상순~12월 상순	20퍼센트 이하		
자두	5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0퍼센트 이하		
호두	8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0퍼센트 이하		
살구	5년 이하	2월 하순~3월 하순, 11월	10퍼센트 이하		